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제 품 명 : I-oneNet 1대, NGS 2대
○ 발 주 기 관 : 경기도 의왕시
○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휴네시온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의왕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1,963,08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* 2027.1.1.~2027.12.31.(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)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5년 09 월 일
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휴네시온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제 품 명 : ONE-I 5000 2대, ONE-I 1000 1대
○ 발 주 기 관 : 경기도 의왕시
○ 제조사 . 공급사 : ㈜윈스테크넷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의왕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,067,2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* 2027.1.1.~2027.12.31.(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)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 월 일
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㈜윈스테크넷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제 품 명 : AXG-7000 4대, AXG-2300 1대, AXG-300S 6대
○ 발 주 기 관 : 경기도 의왕시
○ 제조사 . 공급사 : (주)엑스게이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의왕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8,837,6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* 2027.1.1.~2027.12.31.(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)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 월 일
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주)엑스게이트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제 품 명 : 통합플랫폼 스마트도시안전망 패키지 1식
○ 발 주 기 관 : 경기도 의왕시
○ 제조사 . 공급사 : (사)스마트도시협회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의왕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,000,0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* 2027.1.1.~2027.12.31.(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)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 월 일
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(사)스마트도시협회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제 품 명 : 영상반출솔루션(Content SAFER v3.0) 1식
○ 발 주 기 관 : 경기도 의왕시
○ 제조사 . 공급사 : ㈜마크애니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의왕시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사업을 위해 제조사 . 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대상물품은 귀 사에서 의왕시에 납품한 시스템이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,181,76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* 2027.1.1.~2027.12.31.(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.)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(인)

제조사 . 공급사 ㈜마크애니 (인)